

9세기 발해의 渡唐 留學과 唐의 유학생 정책

권순홍*

요약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발해의 도당 유학이 9세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발해가 건국한 8세기부터 당이 멸망한 10세기 초까지 발해의 도당 유학이 꾸준히 지속되었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발해인이 당의 국자감에서 수학했다는 직접적인 근거와 당의 과거에 응시한 사실을 통해 과거 응시 자격으로서 국자감의 생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를 통해 보면, 발해의 도당 유학은 9세기에 집중된 현상이었다. 둘째, 발해가 당으로 유학생을 파견했던 배경 중 하나로, 당의 유학생 정책에 주목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선진문물 수용의 창구 및 대당 친선외교의 수단이라는, 발해 입장에서의 유학생 파견 목적만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유학생을 유치했던 배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안사의 난 이후, 당의 국자감은 쇠퇴를 거듭하였고, 재정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관료의 봉록 등 각종 공금을 전용해야 했다. 이 외중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흥려시의 예산을 국자감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주요어 발해, 유학생, 국자감, 도당 유학, 빈공

1. 머리말

7세기 이래 唐의 國子監은 儒學을 매개로, 중앙집권적 관료시스템을 교육/재 생산하는 고등교육기구였다. 효율적 시스템을 원용하고자 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일본, 고창, 토번 등 동아시아의 많은 지배 권력들은 당의 국자감으로 학생을 파견하였다.¹ 발해는 713년에 당과 교류를 시작했고, 그 이듬해에 生徒 6인을 당의 국자감에 입학시켰다.² 留學의 배경으로는 주로 선진문물의 적극적 수용을 위한 수단(김종복 2009: 224-226; 宋基豪 1995: 159) 및 당과의 외교 수단(권은주 2014: 16) 등이 지적되었다. 단, 발해의 경우 이때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의 국자감에서 발해의 학생이 유학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비록 기록은 없지만, 8세기 내내 발해의 王弟 혹은 王子가 당에 가서 숙위했다는 사실과 836년에 신라가 숙위 왕자 金義宗을 당에 보내며 학생들을 함께 파견했던 사례 등을 방증 삼아, 발해도 건국 직후부터 멸망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에 학생들을 파견했다고 추정해 왔다(권은주 2014: 17; 宋基豪 1995: 159-166). 그러나 방증 사례들이 대체로 9세기라는 점을 유의하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9세기에 집중된 발해와 신라의 유학 사례들은 8세기 이래의 지속적 渡唐 유학을 방증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증으로 제시한 신라의 경우 7세기 이래 도당 유학의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지만, 9세기 이후 유학생의 수와 성격이 바뀐다는 분석이 주목된다(申滢植

1 이렇게 파견된 학생들은 宿衛學生, 遣唐留學生, 渡唐留學生 등으로 불리는데, 각각의 함의가 다르다. 먼저 숙위학생의 경우, 유학생 가운데 숙위 임무를 맡은 일부의 학생을 가리키므로, 유학생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건당유학생과 도당유학생의 경우 흔히 혼용되지만, ‘遣’과 ‘渡’의 차이에 주목하면, 전자는 정책적으로 당의 국자감에 파견된 국비유학생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국자감에 파견된 국비유학생뿐만 아니라, 사비유학생 및 유학생 등을 포괄한다(金世潤 1982; 曹凡煥 2009: 875-876). 한편, ‘건당’의 행위 주체는 유학생을 파견한 국가 혹은 정부인 반면, ‘도당’의 행위 주체는 유학생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단, 이 글의 관심은 숙위학생과 유학생이 아닌, 국자감 유학생 전반이고, 또 이 글에서는 당 국자감의 사비유학생 유무 논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므로, 연구 대상은 건당유학생의 범주에 가깝다. 단, 권력의 관점을 거부하기 위해, 유학 당사자의 용어로서 ‘도당 유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2 『玉海』卷153, 朝貢, 外夷來朝, 內附, 唐渤海遣子入侍 “開元二年(714)三月 令生徒六人入學 新羅七人”.

1969). 9세기 이전에는 대당 친선이라는 정치외교적 목적 하에 유학생이 파견됨에 따라 대체로 소수의 진골 출신이 유학길에 올랐던 반면, 9세기 이후에는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과 진골의 증가 및 6두품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도당 유학을 촉발시키면서 6두품 출신이 대거 유학길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신라 유학생의 성격 변화와 함께, 기록상 발해 유학생의 재등장이 공히 9세기를 기점으로 한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한편, 파견 당사국인 신라의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파견 대상국인 당의 상황도 주목된다. 9세기 초 이래 당 국자감의 정원 미달 및 재정적 불안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신라의 도당 유학을 급증시켰던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李濟赫·朴賢淑 2018: 234-239). 이에 따라 도당 유학의 배경으로, 각국의 유학 정책 및 유학생 유치의 제반 여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윤재운 2020: 78).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선진문물의 수용과 대당 친선외교로만 설명되었던 발해 도당 유학의 배경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은 발해의 도당 유학이 9세기에 집중되었던 현상을 포착하고, 선진문물의 수용과 대당외교의 수단 이외에, 도당 유학의 또 다른 배경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당 유학과 당의 유학생 정책 간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2. 발해 渡唐 유학의 9세기 집중 현상

漢代 태학이 설립된 이래, 중국의 교육 제도는 유교주의 교육의 강화와 학관 규모의 확대라는 질·양 양 측면의 변화를 거듭해 왔고, 수당대 이르러 중앙집권적 관료시스템의 요람으로서 국자감이 완비되었다(高明士 1984: 163). 특히 7세기 초의 상황을 전하는 아래와 같은 기록은 당시 당 국자감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가) 貞觀 2년(628), (중략) 또 國學에 學舍 1,200칸을 증축하였고, 太學·四門

[學]의 博士 역시 생원을 增置하였으며, 書[學]·算[學]은 각각 박사·학생을 두므로써, 藝文을 갖추었다. 모두 3,260명이었다. 玄武門 屯營의 飛騎들에게도 박사를 [보내] 주어 經業을 전수하였고, 經을 통달할 만한 자가 있으면, 貢舉하도록 하였다. 이때 四方의 儒士들이 典籍을 크게 깊어지고, 京師에 구름같이 모였다. 이윽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 고창, 토번 등 여러 나라의 酋長들이 또한 子弟를 보내 國學之內에 입학시켜줄 것을 청하였다. 입학하여 講筵에 오른 이가 8,000여인으로, 많고도 많으니, 儒學의 융성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³

위의 내용은 연도를 달리하며, 『新唐書』 選舉志(639)와 儒學列傳(632), 『唐會要』(631), 『通典』(631), 『資治通鑑』(640) 등에도 전하는데, 당 태종은 우선 국가감의 공간 확장과 학관 및 학생의 정원 확대 등 제도적 정비를 마친 후에, 문인 뿐만 아니라, 군인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감 입학도 허락하였다.

나) 신이 옳드려 太宗文武聖皇帝의 실록을 보니, 貞觀 원년(627), 群臣과의 연회에서 破陣樂의 곡이 연주되자 황제가 侍臣에게 이르길, “짐이 비록 武功으로 천하를 평정하였으나, 결국은 文德으로 海內를 편안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학사 수백칸을 세우고 사방의 생도를 모으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蕃邦이 좋은 것을 사모하여 [그] 酋長들이 자제를 보내 수업반기를 청하였고, [황제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⁴

3 『舊唐書』 卷189上, 列傳139上, 儒學上 “貞觀二年 … 又於國學增築學舍一千二百間 太學四門博士亦增置生員 其書算各置博士學生 以備藝文 凡三千二百六十員 其玄武門屯營飛騎 亦給博士 授以經業 有能通經者 聽之貢舉 是時四方儒士 多抱負典籍 雲會京師 俄而高麗及百濟新羅高昌吐蕃等諸國酋長 亦遣子弟請入於國學之內 鼓篋而升講筵者 八千餘人 濟濟洋洋焉 儒學之盛 古昔未之有也”.

4 『東文選』 卷47, 狀,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右臣伏觀太宗文武聖皇帝實錄 貞觀元年宴群臣 奏破陣樂之曲 上謂侍臣曰 朕雖以武功定天下 終當以文德綏海內 尋建學舍數百間 聚四方生徒 無何 諸蕃慕善 酋長請遣子弟授業 許之”.

위의 기록은 崔致遠(857~?)이 작성한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의 일부로, 당 태종의 국자감 확충 및 학생 모집 사업이 ‘文德으로 海內를 평안’하게 한다는, 당 중심 국제질서 재편의 수단이었음을 알려준다(申滢植 1969: 62). 이러한 당의 기획에 대해,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대당 외교관계와 선진문물 수용이라는 나름의 목적을 위해 학생 파견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데, 발해 역시 아래와 같이 당과의 국교 수립 직후인 714년에 곧바로 유학생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통해 그 정치외교적 목적이 포착된다.

다) 開元 2년(714) 3월, [발해가] 生徒 6인을 입학시켰다. 신라는 7인이었다.⁵

위 기록은 714년에 발해가 생도 6인을 당의 국자감에 입학시켰다는 사실을 전한다.⁶ 단, 이 기록 이후 발해인 유학생이 확인되는 것은 120여 년이 지난 833년이다. 이 공백이 실제로 유학생이 없었기 때문인지, 유학생은 있었으나 기록에 남지 않았을 뿐인지는 알기 어렵다. 8세기 내내 숙위로 파견되었던 발해 왕제·왕자들의 사례를 고려하면, 숙위 왕족 혹은 함께 파견되었던 수행원 가운데 국자감에 입학한 유학생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지만(宋基豪 1995: 163-164), 양국의 정치외교적 목적 하에 시작된 유학이었던 만큼, 정치외교 상의 변천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거듭될 소지가 컸다.

한편, 아래의 기록은 國初부터 9세기 후반까지 발해가 꾸준히 당에 유학생을 파견했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권은주 2014: 16; 宋基豪 1995: 160).

라) 앞서, 그 왕은 자주 諸生을 파견하여, 京師의 태학에 가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알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드디어 海東盛國이 되었다.⁷

5 『玉海』卷153, 朝貢, 外夷來朝, 內附, 唐渤海遣子入侍 “開元二年(714)三月 令生徒六人入學 新羅七人”.

6 이에 관해서는 다)의 「開元」을 「開成」의 오키로 보고, 『唐會要』에 전하는 개성 2년, 즉 837년 기사가 위와 같이 착종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종복 2011:18). 만약 다)를 착종된 기록으로 본다면, 발해의 도당 유학 관련 기록은 9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셈이다.

7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 “初 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爲海東

위 기록은 『신당서』 발해열전의 일부로, 발해가 당의 국자감에 학생을 자주 파견하여 중국 고금의 여러 제도를 배웠다는 사실을 전하는 동시에, 이러한 도당 유학을 매개로 발해가 비로소 해동성국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이 문장의 첫 글자인 「初」를 ‘國初/처음’으로 해석한다면, 국초부터, 海東盛國으로 평가받은 9세기 후반까지 도당 유학이 이어졌다고 이해될 수 있다(강나리 2018: 182; 권은주 2014: 16; 宋基豪 1995: 153). 단, 이때의 「初」는 같은 문장의 「是」, 즉 ‘9세기 후반/이때[時]’에 대응시켜, ‘그 이전/앞서’ 등의 막연한 의미로 해석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위 문장은 건국기부터 咸通(860~873) 연간까지 발해의 외교관계에 대한 서술과 발해의 각종 제도 및 습속에 대한 설명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속문장으로서, 함통 연간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도당 유학이 있었다는 의미일 뿐, 구체적인 시점을 비정하기는 어렵다. 바꿔 말하면, 714년의 학생 파견 이후, 아래 마-1)·2)의 833년까지는, 숙위 등의 간접적 방증사례가 있을 뿐, 발해의 도당 유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 없는 셈이다.

마-1) [唐] 文宗 太和 7년(833) 春正月 己亥, 銀青光祿大夫·檢校秘書監·忽汗[州]都督·[渤海]國王 大彝震이 아뢰길, “學士 解楚卿·趙孝明·劉寶俊 3인을 謝恩使인 同中書右平章事 高賞英에 딸려 보내니, 上都學間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보냈던 학생 李居正·朱承朝·高壽海 등 3인은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전례에 준하여 교대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허락하였다.⁸

마-2) [大和] 7년(833) 정월, 同中書右平章事 高寶英을 파견하여, 와서 책명에 사례하였는데, 여기에 [高]寶英을 따라 학생 3인을 보내, 上都學間에 들어가게 해주길 청하였다. 먼저 보낸 학생 3인은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본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허락하였다.⁹

盛國”.

8 『冊府元龜』卷999, 外臣部, 請求“文宗太和七年春正月己亥 銀青光祿大夫檢校秘書監忽汗都督國王 大彝震奏 遣學士解楚卿趙孝明劉寶俊三人附謝恩使同中書右平章事高賞英 赴上都學間 先學生 李居正朱承朝高壽海等三人 事業稍成 請准例遞承歸本國 許之”.

9 『舊唐書』卷199下, 列傳149下, 北狄, 渤海靺鞨“七年正月 遣同中書右平章事高寶英來謝册命 仍

마-3) [開成] 2년(837) 3월, 발해국이 賀正[하러 가는] 王子 大俊明을 따라 學生 도합 16인을 함께 입조시켰다. [황제가] 칙을 내려, 발해가 生徒의 習學을 청한 바, 마땅히 靑州 觀察使로 하여금 6인을 놓아주어 上都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10인은 억지로 돌려보냈다.¹⁰

마-1)과 마-2)는 833년에 발해가 도당 유학생 3인을 교대시켰다는 내용을 전한다. 학생 인솔자의 인명 차이(高賞英/高寶英)와 학생 명단의 유무 등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대략의 내용은 같다. 마-3)은 837년에 발해가 16인의 학생을 당에 보냈으나, 당에서 6인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사실을 전한다.

위의 기록들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830년대에 적어도 12인의 발해인 도당 유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833년 이전에 이미 당에 와서 유학하다가 833년에 귀국하게 된 李居正·朱承朝·高壽海 등 3인, 이들과 교대하여 833년부터 유학하게 된 解楚卿·趙孝明·劉寶俊 등 3인, 그리고 837년에 입학한 무명의 6인까지 총 12인이다.

둘째, 당 국자감이 발해 유학생의 유학기한을 정해두었다는 사실이다. 미리 와 있던 李居正 등이 833년에 교대했던 명시적 이유는 ‘사업을 이미 이루었다(事業稍成)’는 것이었는데, 국자감의 유학기한이 10년이었던다는 최치원의 언급¹¹과 신라의 경우 기한이 차면 다른 학생으로 교대했다는 安鼎福(1712~1791)의 설명¹²을 참고하면, 마-1)·2)의 ‘事業稍成’ 역시 유학기한을 마쳤다는 의미일 수 있다. 단, 발해 유학생의 경우에도 10년이 기한이었던지는 알기 어려운데, 당 국자감의 재학기간이 9년을 넘지 못한다는 『唐六典』의 기록¹³과 『신당서』 선거지의 기록

遣學生三人隨寶英請赴上都學問 先遣學生三人 事業稍成 請歸本國 許之”.

- 10 『唐會要』卷36, 附學讀書 “二年三月 渤海國隨賀正王子大俊明 并入朝學生 共一十六人 勅 渤海所請生徒習學 宜令靑州觀察使 放六人到上都 餘十人勒迴”.
- 11 『東文選』卷47, 狀,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學其四術 限以十冬”; 『東文選』卷47, 狀, 奏請宿衛學生還蕃狀 “宿衛習業學生四人 今錄年限已滿 伏請放還 … 請留學問 聖恩允許 得則慶中 今已限滿十年”.
- 12 『東史綱目』卷5上, 己酉年 眞成女主 3年 “新羅自事唐以後 … 又遣學生 入太學習業 十年限滿還國 又遣他學生入學者 多至百餘人”.
- 13 『唐六典』卷21, 國子監, 丞 “凡六學生有不率師教者 則舉而免之 其頻三年下第 九年在學及律生六

¹⁴을 참고하면, 최치원과 안정복이 언급했던 10년은 국자감 재학기간 9년에 더해 입출국 기간을 포함한 기간일 수 있다(郭麗 2016: 69). 그렇다면 발해 유학생의 경우에도 10년 정도를 유학기간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정 등 3인의 도당시기는 823년경까지 소급될 수 있다.

셋째, 837년에 입학한 6인은 833년에 입학한 3인과 교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833년의 그들이 발해로 귀국했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837년의 6인이 추가로 선발된 인원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단, 전자의 경우 9년의 국자감 수학 기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당에서의 체류 기간을 알 수 있는 신라의 도당 유학생 7인 전원이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¹⁵ 가능성이 낮다. 즉, 837년 당시 당의 국자감에는 833년에 입학했던 해초경·조효명·유보준 등 3인과 837년에 입학한 무명의 6인 등, 적어도 9인이 함께 수학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자감에서 수학했다는 기록은 없더라도, 당의 과거에 급제한 발해인의 사례도 9세기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대의 과거 응시자는 學館을 거친 생도와 당의 州縣에서 올라온 鄉貢으로 구분되었다는 『신당서』 선거지의 기록¹⁶을 유의하면, 당의 과거에 급제한 발해인의 경우, 학관을 거친 생도, 즉 국자감에서 수학한 도당 유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1) 貞觀(627~649) 연간부터 (중략) [황제께서] 桑津(신라)의 학생이 槐市(태학)의 생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중략) 얼마 지나지 않아 異俗(발해)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大中(847~860) 초기부터 그들과 저희(발해와 신라)가 나란히 春官(禮部)의 시험을 거치게 되었습니다.¹⁷

年無成者亦如之”.

14 『新唐書』卷44, 志34, 選舉志上 “併三下與在學九歲律生六歲不堪貢者罷歸”.

15 梁悅(783년 이전~800년 이전), 朴充(846년 이전~860년 이후), 崔致遠(868~885), 金茂先·崔渙·崔匡裕(885~897), 崔彥摠(897~909). 신라 도당유학생의 당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강나리(2018:177-179) 참조.

16 『新唐書』卷44, 志34, 選舉志上 “唐制 取士之科 多因隋舊 然其大要有三 由學館者曰生徒 由州縣者曰鄉貢 皆升于有司而進退之”.

17 『東文選』卷47, 狀, 與禮部襄尙書瓚狀 “自貞觀中 … 仍許桑津之學者 俾隨槐市之生徒…無何異俗

바-2) 그 [고]구려가 지금 발해가 되었는데, 근년에 와서 高科에 계속 올랐습니다.¹⁸

바)는 모두 최치원이 작성한 글의 일부로, 바-1)은 발해의 도당 유학생이 국자감에서 수학한 정확한 시점을 전하지는 않지만, 大中(847~860) 연간 초기부터 발해의 도당 유학생이 禮部試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바-2)는 신라의 朴仁範과 金渥 등 2인의 과거 급제에 대해, 당시 知貢舉였던 高湘에게 감사를 전하는 글의 일부로, 발해가 근년에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했고 몇 년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여기서의 근년은 870년대일 가능성이 높다(宋基豪 1995: 173-174). 즉, 9세기 중반경부터 발해의 도당 유학생은 국자감을 거친 생도로서, 당의 과거에 응시하였고 870년대에 이미 지속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1) 靖恭 崔侍郎이 賓貢 2인을 붙였을 때 발해의 烏昭度가 首[位]였습니다. 韓非가 老聃과 함께 전해지는 것은 일찍부터 달갑게 여기기 어려웠고, 何偃이 劉瑀의 앞에 있는 것은 실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곡물을 드날릴 때 쪽정이가 앞선다지만 어찌 술 찌꺼기 마시기를 즐기겠습니까. 이미 四隣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오래도록 일국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¹⁹

사-2) 예전 靖恭 崔侍郎이 貢舉를 주관하던 해에 이르러, 賓薦及第者가 2인이었는데, 발해의 烏昭度가 상[등]이었습니다.²⁰

사-3) [崔彦擣는] 신라 말에 나이 18세에 당에 들어가 유학하였고, [당의] 禮部侍郎 薛廷珪 아래에서 급제하였다. 이때 발해 재상 烏昭度の 아들 光

亦忝同科 自大中初 一彼一此 春官歷試”.

18 『東文選』卷47, 狀,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惟彼句麗 今爲渤海 爰從近歲 繼忝高科”.

19 『東文選』卷47, 狀,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靖恭崔侍郎放賓貢兩人 以渤海烏昭度爲首 韓非同老聃之傳 早已難甘 何偃在劉瑀之前 其實堪恨 縱謂簸揚糠粃 豈能舖啜糟醢 既致四隣之譏 永貽一國之恥”.

20 『東文選』卷47, 狀, 與禮部裏尙書瓚狀 “至故靖恭崔侍郎主貢之年 賓薦及第者兩人 以渤海烏昭度爲上”.

贊이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오]소도가 당에 입조하였다가 이들의 이름이 [최]언위의 아래인 것을 보고 표문을 올려 청하길, “신이 옛날에 입조하여 登第하였을 때, 이름이 李同의 위에 있었으니, 지금 신의 아들 광찬도 [최]언위의 위로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최]언위의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²¹

사)는 당의 과거에 급제한 발해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명이 드러난 사례이다. 사-1)·2)는 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사-1)은 바-2)와 마찬가지로 고상에게 감사를 전하는 글의 일부이고, 사-2)는 최치원 본인이 과거에 급제하여 당시 知貢舉였던 裴瓚에게 감사를 전하는 글의 일부이다. 두 기록에서 공히 발해인 烏昭度가 빈공으로 당의 과거에 급제했던 사실을 전한다. 단, 이 두 기록을 통해서는 오소도의 과거급제가 최치원이 급제한 874년과 박인범 등이 급제한 877년 보다 이른 시기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점을 알기는 어렵다.

사-3)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烏昭度(烏昭度)가 급제했을 당시 오소도의 아래에 이름을 올렸던 신라인이 李同이라는 사실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이동은 869년 7월에 도당했으므로,²² 오소도가 급제한 시기는 869~874년으로 추정되고, 이 기간 중 최씨 성을 가진 지공거는 崔瑾뿐이라는 『登科記考』의 기록에 따라,²³ 오소도가 급제한 해는 872년으로 특정된다(宋基豪 1995: 168). 둘째, 오소도의 아들인 烏光贊도 당의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이다. 사-3)에 따르면, 오광찬은 신라의 崔彦擣(868~944)와 같은 해에 급제했는데, 『등과기고』에 따르면 薛廷珪가 지공거였던 해는 906년이므로,²⁴ 오광

21 『高麗史』卷92, 列傳5, 諸臣, 崔彦擣 “新羅末 年十八 游學入唐 禮部侍郎薛廷珪下及第 時淳海宰 相烏昭度子光贊 同年及第 昭度朝唐 見其子名在彦擣下 表請曰 臣昔年入朝登第 名在李同之上 今 臣子光贊宜升彦擣之上 以彦擣才學優瞻 不許”.

22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9年(869) “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入唐 … 又遣學生李同等三人 隨進奉使金胤入唐習業”.

23 『登科記考』卷23 “[咸通]十年(869)…知貢舉 禮部侍郎王凝…十一年(870)…停舉…十二年(871)…知貢舉 中書舍人高湜…十三年(872)…知貢舉 中書舍人崔瑾…十四年(873)…知貢舉…是年知舉未知何人…咸通十五年(874)…知貢舉 禮部侍郎裴瓚”.

24 『登科記考』卷24 “[天祐]三年(906) … 知貢舉 吏部侍郎薛廷珪”.

찬과 최언위가 급제한 해는 906년이다(宋基豪 1995: 168; 李基東 1984: 254).

한편, 18세기에 편찬된 『全唐詩』에는 徐夔이라는 인물의 시가 실려 있는데, 발해인으로서 빈공진사였던 高元固가 자신을 방문하자, 서인이 그에게 써준 시이다.²⁵ 이에 따르면 서인은 고원고를 先輩라고 불렀다. 선배는 唐代 진사들 간 서로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지적²⁶과 892년 급제자명단에 徐寅이라는 인물이 실린 『등과기고』의 기록²⁷을 참고하면, 고인고는 892년 이전에 급제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⁸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발해의 도당 유학 관련 기록이 9세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국자감에 입학했다는 직접적인 사례들이고, 다른 하나는 당의 과거에 급제한 사실을 통해, 과거 응시자격으로서 국자감의 생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간접적 사례들이다. 전자의 경우, 적어도 12인의 도당 유학생이 830년대에 집중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로써 오히려 『신당서』 발해열전의 「初」는 830년대 이래의 의미일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840년대부터 당의 과거에 합격하는 발해인이 있었다는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872년에 급제한 오소도, 892년경 급제한 고원고, 906년에 급제한 오광찬 등이 국자감 유학을 거쳐 당의 과거에도 급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오광찬을 끝으로 발해의 도당 유학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당의 멸망(907)이 임박했던 혼란기였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신라 유학생의 사례를 참고하면, 대체로 입당부터 급제까지 대체로 5년이 걸렸으므로(강나리 2018: 177-179), 오광찬의 입당시기는 900년을 전후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기록은 그즈음 당 국자감에 발해 유학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

25 『全唐詩』卷709, 渤海賓貢高元固先輩 閩中相訪云 本國人寫得 彘斬蛇劍御溝水人生幾何賦 家皆以金書 列爲屏障 因而有贈 “折桂何年下月中 閩山來問我雕蟲 肯銷金翠書屏上 誰把芻蕘過日東 鄉子昔時遭孔聖 繇餘往代諷秦宮 好是慈恩題瞭望 白雲飛盡塔連空”.

26 『唐國史補』卷下 “得第謂之前進士 互相推敬謂之先輩”; 『茶餘客話』卷2 “唐時舉人 呼已第者爲先輩”; 『讀已見書齋隨筆』 “唐人稱進士爲先輩者 言其登第必在同輩之先也 故又稱必先與后人稱先及第爲前輩之意不同”.

27 『登科記考』卷24 “景福元年(892) 五月 丙寅大赦改元景福 進士三十人 … 徐寅”.

28 唐代之先輩를 같은 해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보면서 고원고가 급제한 해도 서인과 마찬가지로 892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宋基豪 1995:169).

한다.

아) 지금에 이르러 국자감 내에는 홀로 신라의 馬道만 四門館의 北廊 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 諸蕃은 조용히 그 길이 끊겼고, 저 발해만 해도 膠庠에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桃野의 諸生으로 하여금, 杏壇의 學侶에 끼게 하였습니다.²⁹

최치원은 위와 같이, ‘지금’에 이르러 국자감에 신라 유학생만 있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은 없다고 전하며, 그 중에서도 발해 유학생이 없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여기서의 ‘지금’을 897년(李基東 1984: 253) 혹은 그즈음(今西龍 1933: 393)으로 볼 수 있다면, 890년대에 발해의 도당 유학이 중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宋基豪 1995: 165). 앞서 확인한 대로, 오광찬은 900년경부터 국자감에서 유학했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위의 기록을 최치원의 과장으로 이해하거나(宋基豪 1995: 166), 四門館에 한정된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권은주 2014: 19-20). 다만 그렇더라도 연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9세기 말에 발해의 도당 유학이 감소했다는 경향성만큼은 인정할 수 있다.

요컨대, 기왕에는 발해의 도당 유학이 건국 직후부터 멸망 때까지 지속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문헌 사료에 남은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 사례는 9세기, 특히 830년대~890년대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唐의 유학생 정책과 賓貢의 의미

발해의 도당 유학이 9세기에 집중되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세기 당시, 발해의 유학생 파견 목적과 당의 유학생 유치 목적,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는 후자를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발해뿐만 아니

29 『東文選』卷47, 狀,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至今國子監內 獨有新羅馬道在四門館北廊中 羸彼諸蕃 聞其中絕 祇如浮海 無藉膠庠 唯令桃野諸生 得廁杏壇學侶”.

라 신라의 경우에도 9세기에 도당 유학이 집중되었다면, 파견 대상국인 당의 사정도 집중 현상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우선, 발해의 파견 목적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록이 주목된다.

자) 앞서, 그 왕은 자주 諸生을 파견하여, 京師의 태학에 가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알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드디어 海東盛國이 되었다. 그 땅에는 5京·15府·62州가 있다. (중략) 官[制]에는 宣詔省이 있는데, 左相·左平章事·侍中·左常侍·諫議가 소속되어 있다. (중략) 대개 중국의 제도를 본 받은 것이 이와 같다.³⁰

위의 기록은 『신당서』 발해열전의 일부로, 발해의 유학생 파견이 중국의 제도를 원용하고자 했던 지배 권력의 정치외교적 목적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물론 『신당서』의 기술은 중국인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발해 유학생의 경우 유학 당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는 사실로부터 학업 성취보다는 선진문물의 견문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마-1)에 등장했던 이거정의 경우, 833년 유학을 마치고 발해로 귀국한 뒤의 행적이 남아 있는데, 861년에 일본으로 파견되었을 때 이미 70세(懸車)를 넘겼다는 『日本三代實錄』에 따르면,³¹ 유학을 마쳤던 833년에 42세를 넘겼던 셈이고, 발해 유학생의 유학 기간이 10년 남짓이었다는 추정을 인정한다면, 처음 도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32세를 넘겼던 셈이다(宋基豪 1995: 161). 최치원·최언위 등 신라 유학생의 경우 주로 10대에 도당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유학의 목적이 단지 학업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를 통해 발해의 유학생 파견 목적을 선진문물 수용(宋基豪 1995: 161) 내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권은주 2014: 18)로 해석할 수 있었다.

30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 “初 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 官有宣詔省 左相左平章事侍中左常侍諫議居之 … 大抵憲象中國制度如此”.

31 『日本三代實錄』卷5, 清和天皇, 貞觀3年 “春正月 廿日 乙未 出雲國上言 渤海國使李居正等一百五人 自隱岐國來着島根郡 … 五月 廿一日 甲午 … 居正位在公卿 齡過懸車”.

다음, 당의 유학생 유치에 관한 해석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자감의 유학생 유치는 당 태종이 기획했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일종의 정책적 배려로 해석되기도 하지만(宋基豪 1995: 172), 9세기에 한해서는 당 국자감의 정원 미달과 재정적 불안 등 운영상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李濟赫·朴賢淑 2018: 236-237). 중앙집권적 관료시스템 및 국제질서를 교육/재생산하는 국자감의 쇠퇴는 당으로서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 중대사였기 때문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사료적 근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가 9세기에 당의 국자감이 정원 미달과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유학생을 유치했다고 해석했던 주요 근거는 아래의 차-1)인데, 이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차-1) 當監四館學生 每年有及第闕員 其四方有請補學生人³²

차-2) 국자감의 4관 학생에 매년 급제 꺾원이 있습니다. 이에 四方에서 학생을 보충하기를 청합니다(李濟赫·朴賢淑 2018: 236).

차-1)은 『唐會要』와 『冊府元龜』에 공히 전하는 기록으로, 822년에 당의 국자감 재주 위건도가 상주한 내용이다. 해당 연구는 차-1)을 차-2)로 번역하며, 四方을 ‘중국과 그 바깥’으로 이해하였다(李濟赫·朴賢淑 2018: 237). 이에 따라, 국자감에 발생한 꺾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의 유학생을 유치할 것을 요청하는 상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번역의 문제이다. 차-2)는 「每年有及第闕員」과 「其四方有請補學生人」을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급제 꺾원’이 있으므로 사방에서 학생 보충을 청한다는 해석이었다. 특히, 「其四方有請補學生人」의 서술어를 「請」으로 파악한 것이었다. 단, 차-1)의 문장 구조와 「有請」에 유의하면, 차-1)의 서술어는 「每年有及第闕員」의 「有」와 「其四

32 『唐會要』卷66, 東都國子監, 長慶二年閏十月; 『冊府元龜』卷604, 學校部8, 奏議3, 韋乾度爲國子祭酒.

方有請補學生人」의 「有」로 파악된다. 바꿔 말하면, 「其四方有請補學生人」의 경우 ‘보충을 사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이 사방에서 있었다’고 번역된다. 따라서 차-1)은 국자감의 당면과제를 제시한 문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번역된다.

카) 當監(국자감)의 4관 학생에 매년 급제 궐원이 있으니, 그 사방에서 학생의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둘째, 해석의 문제이다. 차-2)는 ‘四方’을 중국의 바깥으로 해석하여, 외국에서 유학생을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이를 위해 ‘사방’이 중국과 그 바깥까지를 의미하는 『당회요』의 용례를 방증으로 제시했지만, 여러 상주문을 모아 놓은 『당회요』 해당부분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회요』 안에서의 용례분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작성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사방’ 앞의 「其」를 유의하면, 四方은 ‘국자감의 사방’쯤으로 직역되고, 문맥상 국자감의 四館을 의미하거나 州縣의 학교를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차-1) 이하의 상주문에 따르면, 위건도는 학생 보충에 관한 기왕의 관행과 절차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³³ 특히, 서로 들어가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와중에, 외국 유학생 유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결국 차-1)은 국자감의 운영상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시도되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 없다. 다만 그렇더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9세기 당 국자감의 정원 미달과 재정 불안을 배경으로 한다는 해당 연구의 지적은 곱씹어 볼만하다. 안사의 난(755~763) 이후, 국자감의 교육 공간은 폐허가 되었고, 학생 정원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미달이었으며, 당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열악하여, 관료의 봉록 및 釋奠禮 비용 등 각종 공금을 국자감 운영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吳富尹 2008: 101-

33 『唐會要』卷66, 東都國子監, 長慶二年閏十月; 『冊府元龜』卷604, 學校部8, 奏議3, 韋乾度爲國子祭酒.

103).

均田制 및 租庸調 제도의 붕괴에 따라 국가 재정이 무너짐으로써, 국자감 등의 공적인 교육기관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宋大川 1998: 143). 이러한 국자감 쇠퇴는 9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했다는 사실은 유학생 유치가 국자감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쇠퇴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래의 기록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자감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짐작하게 한다.

타-1) 왕자 金昕을 보내, 入唐하여 조공하게 하였다. 나아가 아뢰길, “앞서 대학에 있던 [학]생 崔利貞·金叔貞·朴季業 등을 蕃(신라)으로 방환해 주시고, 새로 [당] 조정에 간 金允夫·金立之·朴亮之 등 12인을 숙위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국자감에 배속시켜 習業하게 해주시고 鴻臚寺가 경비와 양식을 지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따랐다.³⁴

타-2) 지금의 膠庠(학교)은 弦歌가 들리지 않습니다. 室廬는 무너지고 생도는 흩어졌으니, 옳지 않음에도 學官은 振學하려 하지 않고, 괴롭게도 학업용으로 지급될 資財가 없습니다.³⁵

타-3) 학생 李同 등 3인을 보내, 進奉使 金胤을 따라 入唐하여 習業토록 하였다. 이에 책 살 [돈으로] 銀 300兩을 주었다.³⁶

타-4) 신은 감히 興學을 으뜸으로 삼고, 求賢을 임무로 여깁니다. 책 살 돈은 박하지만 고루 이미 나누어 주었으며, 글 읽을 양식은 洪恩을 은근히 바랍니다. 장차 千里의 여정에 마련된 비용은 오히려 三月도 힘겹고, 十年의

34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7年 夏5月 “遣王子金昕入唐朝貢 遂奏言 先在大學生崔利貞金叔貞朴季業等 請放還蕃 其新赴朝金允夫金立之朴亮之等一十二人 請留宿衛 仍請配國子監習業 鴻臚寺給資糧 從之”.

35 『全唐文』卷603, 劉禹錫5, 奏記丞相府論學事 “今之膠庠 不聞弦歌 而室廬圯廢 生徒衰少 非學官不欲振學也 病無資財以給其用”.

36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9年 “遣學生李同等三人 隨進奉使金胤入唐習業 仍賜買書銀三百兩”.

생활에 곤궁을 면하는 것은 오직 九天을 바라볼 따름입니다.³⁷

타-1)은 825년에 신라가 유학생을 교대시켰던 내용을 전하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같은 내용이 『全唐文』에도 전한다.³⁸ 이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필요 경비를 鴻臚寺에서 지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의 “서적과 양식을 당 鴻臚寺에서 공급받았다”³⁹는 안정복의 설명도 마찬가지였다. 鴻臚寺의 職掌이 賓客에 관한 일이었으므로,⁴⁰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반면, 타-2)에 따르면, 당 본국의 국자감 학생들은 필요경비를 국자감에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타-2)는 劉禹錫(772~842)이 황제에게 상주한 내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정 부족을 국가 재정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吳富尹 2008: 103), 문맥상 타-2)의 주어는 「今之膠庠」이므로, 학업용으로 지급될 자재가 없다는 것은 膠庠, 즉 국자감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 이후 학생이 먹고 입는 모든 일용품은 학교에서 공급해주었으며, 이는 역대로 차이가 없었다(陳靑之 1936: 181). 즉, 똑같은 국자감 학생이더라도 당 본국 학생은 국자감에서, 외국 유학생은 홍려시에서, 각각 출자기관이 달랐던 셈이다(郭麗 2016: 67). 예컨대, 본국 학생 100명에 대한 국자감 예산이 100이라면, 본국 학생 50명, 외국 유학생 50명의 경우 국자감 예산은 50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려시의 예산 확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책부원구』의 조공기사를 토대로 한 당대 조공횟수 통계에 따르면, 당 전시기 1299건의 조공사례 중 928건(약 71%)이 당 전기에 집중되었고, 연간 조공횟수의 경우 代宗代(762~779)까지는 약 6.5회인 반면, 德宗代(779~805) 이후는 약 1.9회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최재영 2009: 264-272). 관료의 봉록 등 각종 공금을 전

37 『東文選』卷47, 狀,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臣敢以興學爲先 求賢是務 買書金則已均薄 貲讀書糧則竊覲洪恩 且千里之行 聚費猶勞於三月 十年爲活 濟窮唯仰於九天”.

38 『全唐文』卷1000, 分別還蕃及應留宿衛奏 “先在大學生崔利貞金叔貞樸季業四人 請放還蕃 其新赴朝貢金允夫金立之樸亮之等一十二人 請留在宿衛 仍請配國子監習業 鴻臚寺給資糧”.

39 『東史綱目』卷5上, 己酉年 眞成女主 3年 “而書糧唐自鴻臚寺供給”.

40 『唐六典』卷18, 鴻臚寺 “鴻臚卿之職 掌賓客及凶儀之事”; 『舊唐書』卷44, 志24, 職官3 “鴻臚寺…卿之職 掌賓客及凶儀之事”.

용해야 했던 국가감의 재정적 빈곤과 함께, 위와 같은 외국 사절의 조공 횟수 감소는 흥려시 예산이 국가감 생도에게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바꿔 말해, 흥려시가 관리했던 외국 사절의 수가 9세기 이후에 급감했던 반면, 같은 시기 발해·신라 등 외국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던 셈이다.

단, 타-3)·4)에 따르면, 흥려시에서 유학생에게 지급한 資財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타-3)은 869년에 신라가 유학생 3인을 당에 파견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삼국사기』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신라조정이 서적구입 명목으로 銀 300兩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仍」에 주목하여, 銀 300兩 정액 지급이 일종의 관례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郭麗 2016: 67). 최치원이 작성한 타-4)에서도 서적구입 비용은 신라조정에서 지급하고, 식량 등의 비용은 당에서 지급하길 바라고 있다. 유학 당시 “글 읽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최치원의 언급이나,⁴¹ 당에서 “지급하는 衣糧으로는 겨우 목숨만 이을 수 있고, 束脩와 讀書의 용도로는 부족”하다는 9세기 초 일본의 도당유학생 橘逸勢의 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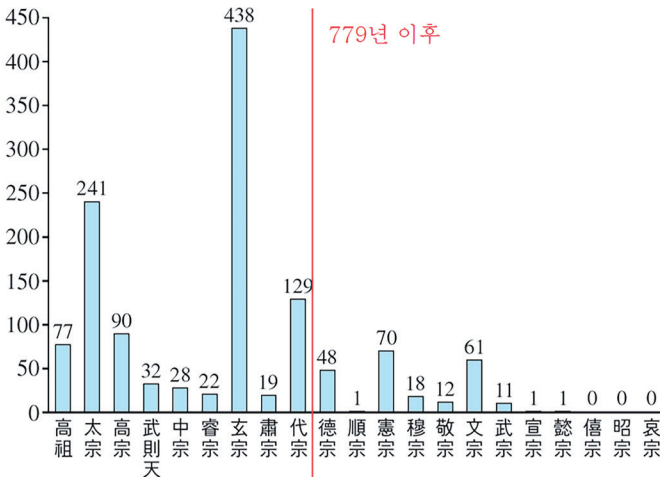


그림 1. 당대 황제별 외국의 조공 횟수

자료: (최재영 2009: 266)의 그림 1(779년 이후' 표시는 필자).

41 『桂苑筆耕集』卷19, 雜書, 與客將書 “買笑金則易求 讀書糧則難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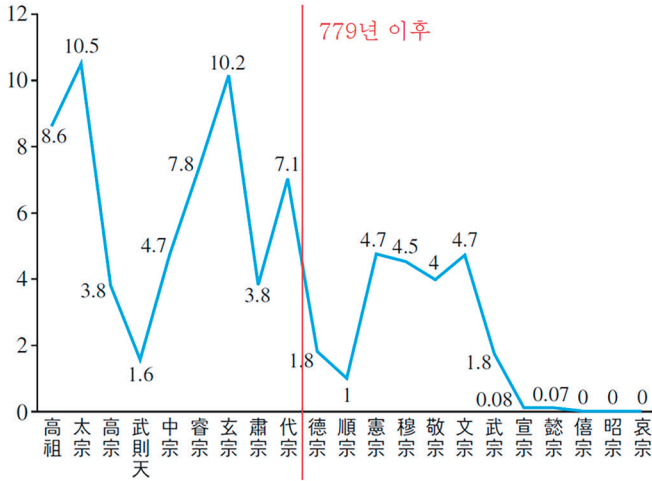


그림 2. 당대 황제 재위기간 중 외국 조공의 연간 평균횟수

자료: (최재영 2009: 267)의 그림 2('779년 이후' 표시는 필자).

연⁴²을 통해서도, 홍려시에서 지급한 경비가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마-3)과 같이 유학생 파견당사국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자감의 재정 부담이 홍려시뿐 아니라, 유학생 파견당사국으로도 분산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자감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냄과 동시에, 유학생에게 받는 束脩를 독점하였다. 속수는 곧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으므로, (陳靑之 1936: 181-182)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에게는 국자감에 지급하는 일종의 입학금이자, 학관에게는 급료 이외의 고정수입이었다(鄭卜五 2015: 341-342). 일회성의 비교적 소액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에 따라 국자감의 재정 부담은 홍려시와 유학생 파견당사국 등으로 일부 분산되었던 반면, 학생들에게 받는 속수는 국자감의 학관들이 오로지 받음으로써, 국자감 입장에서는 수입을 유지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비록 차-1)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청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42 『性靈集』卷5 爲橘學生與本國使啓一首 “此國所給衣糧 僅以續命 不足束脩讀書之用”.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면, 발해·신라 등의 도당 유학이 9세기에 집중했던 배경 중 하나로, 당 국자감의 정원 미달 및 재정 불안은 고려될 여지가 있다. 국자감의 부담이나 홍려시의 부담이나, 당 조정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이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전용했던 것이라면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끝으로, 당은 외국인 유학생을 본국 학생들과 달리, ‘빈공’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종래에는 ‘빈공’을 과거시험의 외국인 특별 전형 혹은 별도의 과목으로서 ‘빈공과’로 해석하고(嚴耕望 1955),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했다(李濟赫·朴賢淑 2018: 235-238). 그러나 외국인 특별 전형 혹은 별도의 과목으로서 ‘빈공과’가 당대에 이미 있었다는 기록 가운데, 고려인 崔瀼가 1335년에 쓴 「送奉使李中父還朝序」⁴³가 가장 이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대 기록 중에는 특별 전형 혹은 별도의 과목으로서 ‘빈공과’가 실시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宋代에는 외국인 과거 응시자를 위한 ‘每自別試’의 특별 전형 혹은 별도의 과목으로서 ‘빈공과’가 시행됨으로써(黨銀平 2002: 156), 송대 이후 ‘빈공과’의 의미가 당대로 소급 적용되었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대의 ‘빈공’은 별도의 전형이나 시험과목이 아니라, 단지 외국인 급제자를 가리키는 호칭일 뿐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黨銀平 2002: 156-157). 만약 그렇다면, 당대의 ‘빈공’은 국자감 학생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과거 응시는 허용하더라도, 그들을 본국 합격자와 구분함으로써 당 관직으로의 진출 및 활동에 제약을 두었던 증거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821년 급제한 신라인 金雲卿 이래 ‘賓貢進士’라는 표현은 외국인 급제자의 존재를 보여줄 뿐, 별도의 ‘빈공과’ 실시를 입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빈공’의 의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남북조시대의 문헌에는 거의 없던 ‘빈공’이라는 표현은 隋代에 이르러, 지방에서 인재를 중앙으로 바칠 때 각별히 예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郭麗 2017: 105-106; 黨銀平 2002:

43 『拙菴千百』卷2, 送奉使李中父還朝序 “然所謂賓貢科者 每自別試 附名榜尾 不得與諸人齒”.

152-153). 수당 통일제국의 재건은 관인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으나, 아직 언제 망할지 모르던 왕조의 관직은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따라서 7세기 중반까지 수당의 황제들은 현능한 인물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빈공’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정중히 예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하원수 2021: 180). 바꿔 말해, 7세기 중반까지의 ‘빈공’은 수당 본국의 인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예컨대, 房玄齡(579~648)의 비문에서 그가 “몸을 굽혀 빈공을 좇았다(俯從賓貢)”(吳鋼 1993: 123)는 표현은 7세기 중반경까지의 ‘빈공’이 당 내 국인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입증한다.⁴⁴

844년에 左僕射 王起가 지공거를 말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승려 廣宣이 지은 “靑雲을 향해 賓貢을 이끈다”⁴⁵는 시구는 9세기 전반경에도 ‘빈공’의 뜻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과거에 급제한 인재 전반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전한다. 지공거가 이끄는 것은 단지 외국 출신 과거 급제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세기 후반에 이르면 ‘빈공’의 의미가 축소되는 현상이 포착된다.

과-1) 靖恭 崔侍郎이 빈공 2인을 붙였을 때 발해의 烏昭度가 首[位]였습니다. 韓非가 老聃과 함께 전해지는 것은 일찍부터 달갑게 여기기 어려웠고, 何偃이 劉瑀의 앞에 있는 것은 실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곡물을 드날릴 때 쪽정이가 앞선다지만 어찌 술 찌꺼기 마시기를 즐기겠습니까. 이미 四隣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오래도록 일국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⁴⁶

과-2) 예전 靖恭 崔侍郎이 貢擧를 주관하던 해에 이르러, 賓薦及第者가 2인이었는데, 발해의 烏昭度가 상[등]이었습니다.⁴⁷

44 한편, 방현령의 진사과 급제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가 진사과에 급제했다고 보는 경우, ‘빈공’과 ‘진사’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만(高明士 1984), 과거제의 개시를 수양제 이후로 보는 경우, 방현령의 진사과 급제 사실을 부정하기도 한다(劉海峰 2005: 82-84). 그러나 양자 공히 ‘빈공’이 내국인 인재를 가리켰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45 『唐摭言』卷3, 慈恩寺題名遊賞賦詠雜記 “從辭鳳閣掌絲綸 偏向靑雲領賓貢”.

46 『東文選』卷47, 狀,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靖恭崔侍郎放賓貢兩人 以渤海烏昭度爲首 韓非同老聃之傳 早已難甘 何偃在劉瑀之前 其實堪恨 縱謂簸揚糠粃 豈能飽啜糟醪 既致四隣之譏 永貽一國之恥”.

47 『東文選』卷47, 狀, 與禮部裴尙書瓚狀 “至故靖恭崔侍郎主貢之年 賓薦及第者兩人 以渤海烏昭度

과-1)·2)는 사-1)·2)와 같이, 최치원이 남긴 글의 일부로,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빈공’의 의미 변화이다. 앞서 논증한대로, 과-1)·2)의 崔侍郎은 872년에 지공거였던 崔瑾을 가리키는데, 『등과기고』에 따르면, 그 해에 급제한 진사는 30인이었으므로,⁴⁸ 2인뿐인 위의 빈공/빈천은 단지 인재에 대한 예우의 의미만 갖지 않았다. 특히, 앞서 확인했듯이 빈공급제자에 발해진 오소도와 함께 이름을 올린 이가 신라인 李同이었으므로,⁴⁹ 바)의 빈공/빈천은 곧 외국인 급제자를 의미할 수 있다. 인재를 두루 일컫던 ‘빈공’은 9세기 후반경, 외국 출신의 과거급제자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변했던 셈이다.

둘째는 외국 출신 과거급제자인 ‘빈공’의 명단이 본국 출신 급제자 명단과는 구분되었을 가능성이다. 기왕에는 “[당의 문물을] 觀光한 지 6년 만에 金榜의 끝에 이름을 올렸다”⁵⁰는 최치원의 언급에 주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 학생들과 같은 시험을 치렀더라도, 급제자의 명단은 본국 급제자 명단과 구분되어 그 아래에 배치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黨銀平 2001: 33). 하지만 최치원의 다른 글에 나오는, “본래의 소망은 榜의 끝에 급제하여, 江淮의 한 현령이 되고자 했을 뿐”⁵¹이라는 표현과 “계수나무 가지를 꺾은 한 이름이 金榜의 후과 사마귀가 되었다”⁵²는 표현은 위의 ‘金榜의 끝에 이름을 올렸다’는 언급이 물리적 묘사가 아닌 일반적 겸사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후과 사마귀(懸疣附贅)는 『莊子』 「大宗師」에서 孔子가 子桑戶·孟子反·子琴張 3인을 설명하며, “그들은 삶을 후과 사마귀로 여기고, 죽음을 종기가 터지는 것으로 여긴다”⁵³는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겸양의 수사일 뿐이었다. 즉, 최치원의 수사만을 근거로 빈공급제자의 명단 발표 형식을 복원하는 것은 무리이다.

爲上”.

48 『登科記考』 卷23 “[咸通]十三年(872) 進士三十人 … 知貢舉 中書舍人崔瑾”.

49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崔彦搆 “新羅末 年十八 游學入唐 禮部侍郎薛廷珪下及第 時淳海宰相烏昭度子光贊 同年及第 昭度朝唐 見其子名在彦搆下 表請曰 臣昔年入朝登第 名在李同之上 今臣子光贊宜升彦搆之上 以彦搆才學優瞻 不許”.

50 『桂苑筆耕集』 序, “觀光六年 金金榜尾”.

51 『東文選』 卷45, 表箋, 長啓 “本望止於榜尾科第 江淮一縣令耳”.

52 『東文選』 卷47, 狀, 謝探請料錢狀 “桂折一名作金榜之懸疣附贅”.

53 『莊子』 內篇, 大宗師 “彼以生為附贅縣疣 以死為決疣潰癰”.

단, 과-1)의 「首」에 유의하면, 본국 출신과 외국 출신의 명단을 구분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과-2)에서 오소도의 석차를 표현한 「上」은 이동에 대한 상대적 의미일 뿐이지만, 과-1)의 「首」는 절대적 首位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首」는 급제자 30인 가운데 1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빈공’ 석차 명단 중 1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과)만으로는 외국인 응시자들이 당 본국인과는 다른, 별도의 시험을 치른 결과인지, 본국인과 같은 시험을 치른 후 시험 결과에서만 구분한 것인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한편, 아래의 기록은 9세기 후반기 과거에 응시했던 외국인들이 당 본국인들과 같은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1) 春官氏(禮部)는 매년 進士 30인을 선발하여 將相의 임무를 대비하였다. 이날 장원 이하의 [모든 진사들이] 座主의 집에서 함께 배알하였다. 좌주는 뜰에서 있고, [진사] 한 명 한 명이 들어갔다. (중략) 海東의 士子와 嶺嶠의 士人도 모두 華族과 함께 내외중 형제[처럼] 늘어서서, 따라서 머리를 조아려 절했을 뿐이다.⁵⁴

하-2) 咸通 15년(874) (중략) 진사 30인: 歸仁澤·劉崇望·夏侯澤·崔致遠·顧雲·蔣曙 [등]⁵⁵

하-1)은 唐 昭宗(재위 867~904)대 활동했던 李涪의 『刊誤』에 실린 글의 일부로, 과거에 급제한 30인의 진사들이 座主의 집에 가서 拜禮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海東 혹은 嶺嶠 출신자들도 진사 30인에 포함되어, 당 본국인들과 섞여서 배례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2)는 최치원이 급제한 874년의 진사 합격자 30인 가운데 일부를 나열한 『등과기고』 기록이다. 하-2)에서 최치원은 夏侯澤과 顧雲의 사이에 거론되었는데, 『등과기고』에 따르면, 하후택은 亳州(현재 安徽省 亳州) 譙縣 출신으로 재상까지 올랐던 夏侯孜

54 『刊誤』卷上, 座主當門生拜禮“春官氏每歲選進士三十人 以備將相之任 是日自壯元已下 同謁座主之宅 座主立於庭 一一而進 … 有海東之子 嶺嶠之人 皆與華族絃中表 從使拜首而已”.

55 『登科記考』卷23 “咸通十五年 … 進士三十人 歸仁澤 劉崇望 夏侯澤 崔致遠 顧雲 蔣曙”.

의 아들이고, 고운은 貴池(현재 安徽省 池州) 출신이다.⁵⁶ 즉, 하)를 통해서 외국 출신 급제자들은 당 본국인과 함께 진사급제자 30인에 포함되었고, 좌주에게 배례할 때나 급제자가 거론될 때 구분 없이 섞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수대 이래 내외 인재를 두루 일컫던 ‘빈공’은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의미가 축소되어, 외국 출신의 과거급제자를 가리키게 되었다. 단, 당대에는 외국인 특별 전형 혹은 별도의 과목으로서 ‘빈공과’가 실시되었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 응시자도 본국인과 같은 시험을 치르고, 급제할 경우 본국인과 함께 진사 30인에 포함되었다. 국자감 생도로서 당연한 자격일 수 있다. 당대 ‘빈공’과 송대 ‘빈공과’를 구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급제자 명단을 발표하는 榜에서는 ‘빈공’으로서 본국인과 구분되었다.

결국 9세기에 집중된 발해의 도당 유학은 선진문물 수용과 대당친선 외교라는 발해의 정치외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자감의 쇠퇴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라는 당의 내부사정까지 배경으로 하는 현상이었다. 단, 국자감 생도로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 외국인 급제자들은 별도의 명단으로 구분되었는데, 구분의 이유는 이후의 관직 진출 및 활동에서의 제한 외에는 짐작하기 어렵다.

4. 맺음말

이상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기왕에는 발해의 도당 유학이 발해가 건국한 8세기 초부터 당이 멸망한 1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추정했지만, 사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볼 수 없었다. 건국 직후인 714년에 한 차례 유학생 파견이 확인된 이후, 833년까지 도당 유학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유학생을 파견했다는 직접적인 사례와 당의 과거 응시 및 급제 등을 통해 국자감 수학이 짐작되는 간접적 도당 유학의 사례들이 9세기에

56 『登科記考』卷23 “夏侯澤〈舊書夏侯孜傳子澤…〉崔致遠〈…〉顧雲〈永樂大全引池州府志…貴池人…〉”.

집중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둘째, 기왕에는 발해 도당 유학의 배경으로, 선진문물의 수용과 대당 친선외교라고 하는 발해 입장에서의 과건 목적만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 당 입장에서의 유학생 유치 목적 혹은 배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사의 난 이후 지속된 당 국자감의 쇠퇴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전용 요구를 지적했고, 당 쇠퇴에 따른 외국 사절의 조공 횡수 감소는 흥려시가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셋째, 기왕에는 唐代의 ‘빈공’을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전형 혹은 별도의 과목으로서 ‘빈공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唐代 기록을 통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도 당 본국 출신 응시자들과 같은 시험을 치렀고, 진사과 급제자 30인에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급제자 명단에는 외국인, 즉 ‘빈공’으로 특별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당대 ‘빈공’과 송대 ‘빈공과’를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었다.

교신: 권순홍(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임연구교수)(kwon358@naver.com)

Correspondence: Soon Hong Kwon(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kwon358@naver.com)

2022.04.22 접수, 2022.05.18 심사, 2022.05.24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나리, 2018, 新羅 下代 渡唐留學의 성행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0, 161-193.
- 권은주, 2014, 발해의 교육기관과 인재양성, 한국교육사학, 36(4), 1-26.
- 김세운, 1982, 新羅 下代의 渡唐留學生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37, 149-168.
-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 김종복, 2011, 발해 건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 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11-83.
- 송기호,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 신형식, 1969, 宿衛學生考: 羅末麗初의 知識人의 動向에 對한 일차, 歷史教育, 11·12, 59-

84.

- 오부윤, 2008, 安史의 亂 이후 學校 '衰頹' 原因의 分析, 中國史研究, 53, 89-124.
- 윤재운, 2020, 꿈을 찾아 떠난 사람들: 한국고대 유학생의 연구현황과 과제, 전북사학, 59, 73-97.
- 이기동,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 이제혁·박현숙, 2018, 신라 하대 唐 국자감의 신라 유학생 증가 배경과 유학의 경제적 여건, 歷史教育, 146, 223-251.
- 정복오, 2015, 당대 과거취사가 교육제도에 미친 영향,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315-358.
- 조범환, 2009, 新羅 下代 遣唐國學留學生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石門 李基東教授 停年紀念論叢, 주류성, 875-894.
- 최재영, 2009, 唐代 長安의 朝貢使節의 변화와 鴻臚寺의 기능, 동북아역사논총, 24, 257-299.
- 하원수, 2021, 과거제도 형성사: 황제와 사인들의 줄다리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今西龍(금서룡), 1933,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 宋大川(송대천), 1998, 唐代教育體制研究, 山西教育出版社.
- 吳綱 主編(오강 주편), 1993, 昭陵碑石, 三秦出版社.
- 高明士(고명사), 1984, 隋代的教育與貢舉(上), 大陸雜誌, 69(4).
- 郭麗(곽려), 2016, 唐代留學生教育管理制度述論, 北京社會科學, 10, 65-72.
- 郭麗(곽려), 2017, 唐代賓貢科新論, 中國典籍與文化, 2017(1), 105-114.
- 陳青之(진청지), 1936, 中國教育史, 商務印書館.
- 劉海峰(유해봉), 2005, 科舉學導論,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嚴耕望(엄경망), 1995, 新羅留唐學生與生徒, 中韓文化論集, 1.
- 黨銀平(당은평), 2001, 唐代賓貢進士特殊管理體制新探, 中國學論叢, 14, 27-37.
- 黨銀平(당은평), 2002, 唐代有無“賓貢科”新論, 社會科學戰線, 2002(1), 152-157.

Studying Abroad from Balhae to Tang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of Tang in the ninth century

Soon Hong Kwon*

Abstract This article serves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to demonstrate that the studying abroad from Balhae to Tang was concentrated in the ninth century. The direct evidence that Balhae students studied at Guozijian of Tang and the indirect evidence indicating that they were qualified Guozijian's cadets to take imperial examination of Tang reveals that it occurred intensively in the ninth century. The second purpose is to focus on the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of Tang as one of the reasons that Balhae sent students to Tang. 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only the purpose of dispatch from the perspective of Balhae, which was a channel for the acceptance of advanced cultures and a means of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However, after the An-Shi Rebellion, the Tang's Guozijian continued to decline and as financial instability continued. At this point attracting foreign students was an effective means to redirect Honglusi's budget to Guozijian operating expenses.

Keywords Balhae(渤海), Tang(唐), International Student, Guozijian(國子監), Bingong(賓貢)

* Daegu University,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History, Research Professor, kwon358@naver.com